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등 정·현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다.

같은 규정 별표2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과장·담당관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나, 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농촌지도관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을 복수직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관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기관장 및 부서장의 정·현원을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한편, 「농촌진흥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농촌지도·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 등 같은 법에서 정한 농촌진흥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라남도 산하 일부 시·군에서는 아래와 같이 농촌진흥사업의 집행사무 외에도 주민자치, 복지, 산업경제, 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는 면장직위 및 지방의회의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하는 전문위원 직위에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임명한 사실이 있다.

< 농촌지도직 공무원 임명 부적정 사례 >

자치단체명	직위	정원	현원	비고
장성군	<u>북하면장</u>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5급	<u>농촌지도관</u>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무안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을 법령에 맞게 책정 및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배치, 농촌지도직공무원 정원을 법령에 맞게 책정하는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과장급(시·도 4급, 시·군·구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기 관 명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원에 부합하게 현원을 배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일(25. 5. 2.) 현재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의 과장급(시·도 4급, 시·군·구 5급) 이상 직위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점검한 결과, 정·현원 간 직렬 불일치 등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위반사항 : 불임)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고흥군수, 화순군수, 강진군수, 영암군수, 함평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정원과 현원이 부합하지 않는 직위에 대하여 정원 재책정 또는 정원에 부합하는 현원 배치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붙임】

< 과장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사례 >

자치 단체	직위	정원	현원	비고
-------	----	----	----	----

장성군	문화교육과장	행정·사회복지·시설 5급	농업 5급	
	북이면	행정·농업·녹지·시설 5급	사회복지 5급	

행 정 안 전 부

시정요구

제 목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위반(복수직렬 책정 부적정)

기 관 명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일('25. 5. 2.) 현재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의 복수직렬에 대한 담당업무 확인 결과, 일부 자치단체는 해당 업무 성격과는 관련이 없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책정하는 등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반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함평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업무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해당 복수직렬 정원을 조정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직렬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자치단체	부서	복수직렬		담당업무
		정원	현원	
장성군	교통에너지과	행정· <u>전산</u> 9급	공업 9급	• 자동차 등록·이전·말소 등 • 건설기계 등록·이전·말소 등 •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사업
	기획실	행정· <u>사회복지·보건</u> 8급	행정 8급	• 공직윤리(공직자 재산등록 등) •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방지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공재정환수법
	문화교육과	행정· <u>전산·환경</u> 8급	공석	• 청림문화 체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장성아카데미 강연집 발간 및 배부 • 장성아카데미 홍보 및 자료 관리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등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되며,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15.9월~)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16~’24년)을 통해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에 대한 정비방안을 시·도로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기능,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 등을 자체 검토 후 폐지, 통폐합 또는 협의체 전환 등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였다.

【 위원회 정비 기준 】

1. 폐지 : 목적 달성 등 존치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
2. 통폐합 : 동일 법령 또는 동일 부처 소관으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3. 존속기한 설정 : 영구 존속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 명시(5년 이내)
4. 협의체 전환 :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내부 행정에 관한 심의 위원회
5. 비상설화 :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에 대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령상 임의 설치가 가능하거나 조례 등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123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속한 정비(조례·규칙 개정 등)가 필요하다. (미흡사항 : 붙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통폐합 등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자치단체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
		법령 (강행)	법령 (임의)	조례 등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성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8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 하여 장성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4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 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장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한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3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 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 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례 개정(폐지, 심의시 구성·심의완료후 해산, 유사위원회로 기능통합 등)		○		16

행 정 안 전 부

개선권고

제 목 인력운용계획 및 기구·정원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

기 관 명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운용계획을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인력운용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같은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대상·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19년)을 통해 기구 및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매년 12월)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조직을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다.

❖ 지방의회 의무 제출사항 (「기구정원 규정」 제40조 및 '19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편집) 등)

- ① 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②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③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④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⑤ 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⑥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⑦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⑧ 중기기본 인력계획 ⑨ 자문기관 운영 현황

그러나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기구정원 운영현황 및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일부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위반사항 : 불임)

이에 전라남도 및 관할 시·군은 규정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보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여수시장, 순천시장, 나주시장, 광양시장, 담양군수, 곡성군수, 구례군수, 고흥군수, 보성군수, 화순군수, 장흥군수, 강진군수, 해남군수, 영암군수, 무안군수, 함평군수, 영광군수, 장성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 및 인력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계획 및 기구·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내실있게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 및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권고)

구 분
①인력 재배치·효율화 계획
②가구 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③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 (초과운영 시 사유 첨부)
④행정안전부 조직 진단 및 감사 결과, 자체단체 자체진단 결과

장성군
'21.12.31. '22.12.30. '23.12.29. '24.12.30.
'21.12.31. '22.12.30. '23.12.29. '24.12.30.
'21.12.31. '22.12.30. '23.12.29. '24.12.30.
'21.12.31. '22.12.30. '23.12.29. '24.12.30.

구 분
⑤한시기구·한시정원 현황
⑥전문임기제 운영 현황
⑦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⑧중기기본 인력계획
⑨자문기관 운영현황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

장성군
'21.12.31. '22.12.30. '23.12.29. '24.12.30.
'21.12.31. '22.12.30. '23.12.29. '24.12.30.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23년 해당없음 '24년 해당없음
'21년 미제출 '22년 미제출 '24.02.29. '24.12.30.
'21년 해당없음 '22년 미제출 '23년 미제출 '24년 미제출